

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

2021. 6



CONTENTS

I 개요 01

II 환경책임보험의 상품구조 06

III 환경책임보험 가입 전 확인사항 09

IV 보험금청구 10

부록 환경책임보험 Q&A 모음집 12

I

개요

1 환경책임보험이란?

환경책임보험이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이라 합니다)에 따라 일정 조건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서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DB손해보험(주), NH농협손해보험(주), AIG손해보험(주), 삼성화재해상보험(주), 현대해상화재보험(주) 등 5개 보험사가 환경책임보험 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였으며 DB손해보험(주)가 대표보험사로 선정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매 3년마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며, 2022년에 새로운 보험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2 환경책임보험의 필요성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하여 시설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환경오염피해자는 자동차책임보험처럼 신속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사고 기업은 도산 위험 없이 피해배상책임을 이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환경오염피해 복구를 위한 공공재정 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

환경오염의 특성상 피해의 입증이 어렵고, 고액의 소송비용 및 소송의 장기화 등으로 소송 포기 및 피해감수

사고기업

피해배상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도산하거나 기업 이미지 실추, 브랜드 가치하락 등 막대한 손실 초래

국가

피해복구 특별법 제정, 막대한 국민세금 투입(예시: 구미불산 사고 554억원 투입)

3 환경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의 비교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제3자의 피해를 보장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보험이며, 영업배상 책임보험은 영업행위와 관련한 제3자 피해에 대해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간혹 영업배상책임보험은 '오염사고 추가특별약관'을 첨부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고가 담보되는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환경오염물질이 일시적으로 전파된 사고만 보장합니다. 이에 반하여 **환경책임보험**은 사업장 내 시설에서 사고 발생시 일시적 오염 뿐만 아니라 **누적된 오염(gradual pollution)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까지 보장**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에서 소유·사용·보관 중인 유류저장 탱크에서 누유(Leaking) 사고가 발생하여 제3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양이 오염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의 법적 요건

- 보장금액 : 300억원 ~ 30억원, 군별(가군~다군) 상이
- 보장범위 : 사업장내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피해 모두 보장(점진적 피해 + 급진적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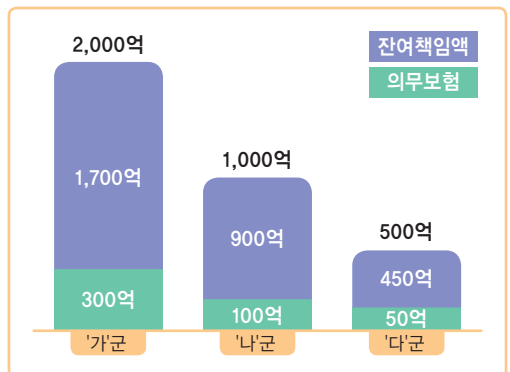
Q 환경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중복해서 보상이 되나요?

A 중복해서 보상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을 동시에 가입하고 사고 원인이 두 보험의 보상하는 손해인 경우 환경책임보험에서 보상한도액까지 우선 보상하고 보상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이 있으면 영업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합니다. (환경책임보험 약관 제14조 및 제15조 참고)

4 초과보험(Excess)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최대 2,000억원**이나 환경책임보험은 법적 책임한도액의 10% 내외(50~300억원)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을 가입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한도까지 모두 보상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체에서 추가적으로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러한 보험상품은 법적 의무 보험이 아닌 임의보험이며, 가입희망 시 보험사로 연락 주시면 가입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환경책임보험의 운영형태

환경책임보험은 보험기간이 1년인 일반보험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대표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6 환경책임보험의 가입대상

사업장 내에 아래와 같은 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준 시설을 1개 이상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모든 환경 관련 시설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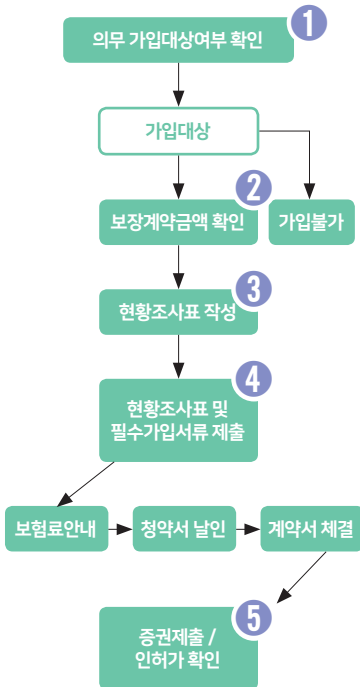
구 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준시설
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1종~5종) ○ 1종 사업장의 대기오염배출시설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1종~5종) ○ 1종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무방류시설 포함)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폐기물처리시설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이 없는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과 지정폐기물 배출시설은 해당 없음
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중 아래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장용량 1천KL 이상인 석유류 제조·저장시설 → 사고대비물질을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 제조·저장시설 → 「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유해화학물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대비물질을 상위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해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시설 중 아래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비축포함)시설 중 합계 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 오염물질저장시설 중 합계용량 300kL 이상인 시설

7 환경책임보험 가입 프로세스

사업장 내 설치·운영중인 시설 중 하나라도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준 시설에 해당될 경우, 전체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사업장이 의무가입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가입대상이면 법률상 보장금액(가군·나군·다군)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상 사업장에서는 환경책임보험전산망(www.eilkorea.or.kr)에서 다운로드 받은 현황조사표 양식에 사업장의 정보를 작성하여 대표보험사(DB손해보험(주))로 송부하거나 환경책임보험 원스탑온라인시스템(www.eilkorea.co.kr)을 통해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 가입 프로세스



1 의무가입대상여부 확인

- ➔ <https://www.eilkorea.or.kr>(환경책임보험전산망)
- ➔ 좌측메뉴 하단 게시판/사업장코드 : 사업자 번호로 조회
- ➔ 의무가입대상여부 확인(사업장코드 필수적으로 확인)

2 보장계약금액 확인

- ➔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 좌측메뉴 보장금액 선택
- ➔ 보유하고 있는 시설 클릭 후 시설 규모 입력 후 확인 (가군, 나군, 나군(소기업), 다군, 다군(소기업))

3 현황조사표 작성

- ➔ 환경책임보험통합관리시스템 공지사항 내 사업장 현황 조사표 및 사업장 배출량(처리량) 양식 작성

4 현황조사표 및 필수 가입서류 제출

- ➔ 대표보험사(DB손해보험(주)) 영업담당자에게 전달
- ➔ 필수가입서류: 사업자등록증, 인허가증(물질포함), 물질량 증빙자료

5 인허가 신청

- ➔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에 보험증권 제출 및 인허가 신청

8 환경책임보험 미가입 처벌규정

환경책임보험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이며,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 사업장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상 벌칙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칙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 제47조(벌칙)

-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호) 법 제 17조를 위반하여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47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행정처분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행정처분기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법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II

환경책임보험의 상품구조

1 상품 기본구조

보장범위

환경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하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를 보장합니다.

상세 보상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손해배상금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 | 손해방지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만, 사업장부지내의 오염정화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 권리보존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 소송·중재비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 공탁보증보험료 |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 | 협조비용 |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보장금액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 구분에 따라 300억원~30억원으로 차등화하여 보장금액 (보장한도)를 설정합니다. 세부 보장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가군	나군		다군	
		소기업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소기업의 시설
보장금액	300억원	80억원	100억원	30억원	50억원

자기부담금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일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자기부담금이라고 하며 **자기부담금은 보상한도(최대 보장금액)의 0.1%**(2021년도 6월~)입니다.

만기환급금 및 배당금지급여부

현재 판매중인 환경책임보험은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보험이며,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입니다.

보험료 및 할인을

환경책임보험의 총보험료는 사업장에서 제출한 **현황조사표(배출물질, 배출량 등)**를 기반으로 산출되므로, 사업장별로 보험료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환경책임보험의 보험료는 **무사고 할인을 5%**(보험사고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무사고인 경우)를 포함하여 **최대 20%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는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현황조사표의 시설평가항목을 꼼꼼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 평가항목) 시설설치년도, 부지경계거리, 이중 탱크 및 배관 여부, 공정안전(PSM) 등급 등을 현황조사표에 기재해 주시면 점수를 부여하여 등급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

환경책임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피해*를 보상해 드립니다.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환경오염피해"란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진동이 그 원인 중 하나가 되는 지반침하(광물 채굴이 주된 원인인 경우는 제외한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화학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정신적 피해를 포함한다)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동일한 원인에 의한 일련의 피해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받은 피해와 해당 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받은 피해는 제외합니다.

또한, 환경책임보험 가입·갱신 시 현황조사표에 **일반화학물질**(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의 **물질량을 기재하여 가입**하시면, 일반화학물질 사고 시에도 보상한도 내에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화학물질 물질량을 조사표에 기재할 때는 다음의 물질은 제외하고 작성하여야 합니다.

- ▶ 고체 광물 또는 1차 가공된 광물류 등으로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물질(석회석, 석탄 등)
-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등 사업장 내 다른 시설에서 보험료가 산출된 물질
- ▶ LNG, LPG 등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서 사고 발생시 화학사고로 보기 어려운 물질

일반화학물질에서 보험요율은 최저보험요율(0.0048원/kg)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보상하지 않는 손해

환경책임보험이 모든 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한 손해 전쟁, 지진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환경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

- 계약자, 피보험자,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
- 전쟁, 내란, 테러, 폭동, 기타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
-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
- 석면으로 생긴 손해/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
- 소급담보일자 이전 발생된 사고 또는 제기된 배상청구
- 피보험자의 임원 또는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환경오염에 노출된 결과 그 임원 또는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장해로 말미암은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손해
-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 자동차 책임보험(보장계약)에서 보상하는 손해
- 소음 또는 진동으로 인한 손해
-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 배출로 생긴 손해
-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책임보험 약관에 의거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도 보상합니다.

IV

보험금청구

환경책임보험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환경오염사고 발생 및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혹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그 내용을 대표보험사에 통지하여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책임보험 **전용콜센터(1670-5420)로 연락**하시면 계약 담당자를 통해 쉽게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부록

환경책임보험 주요Q&A

1.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여부	13
2. 보험 가입 주체	19
3. 보험 가입 시점	20
4. 보상한도 및 가입단위	21
5. 행정처분	24
6. 환경책임보험 운영 방식	25
7. 사업장 현황 조사표 작성	28
8. 사업장 배출량(방류량) 및 처리량 작성	31
9. 일반화학물질 보험료 산정 및 보장 관련	33
10. 할인율 관련	35
11. 중소기업 관련	37

1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 여부

Q1

Q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의무가입 대상 기준 시설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및 [별표3]에 규정된 어느 하나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상기 시설의 설치·운영 여부는 인·허가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환경책임보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도 간단히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확인이 어려우신 경우 해당 인·허가기관(시도, 시군구, 지방환경관서) 또는 운영기관(☎ 02-2284-1850), 대표보험사(☎ 1670-5420)등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2

Q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사업장에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기준 시설을 신규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의무가입 대상 기준 시설을 신규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사전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

※ **보험 가입 시점**

- ✔ (시설 설치 전) 의무가입 대상 기준 시설 중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 해양시설
- ✔ (시설 시운전 전) 그 외의 시설

Q3

Q 휴업하고 있는 사업장도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휴업은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시설을 폐쇄한 것이 아니며, 휴업한 사업자도 법 제17조제1항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고 휴업 중에도 관리 부실 등에 따른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다만, 환경책임보험의 보장기간이 1년으로 휴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보험의 보장효과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1년 이상 휴업하는 사업장 중에서 사업장의 잔여 유해물질을 처분하거나 저장된 물질을 제거하는 등 위해성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Q4

Q 특정대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아닌 일반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는가요?

A 특정대기(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더라도 대기(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Q5

Q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을 가지고 있으나 배출량을 전량 위탁처리 할 경우도 보험 가입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전량위탁처리를 하더라도 해당 시설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현황조사표에 배출되는 물질명은 모두 기록하시되 물질량은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Q6

Q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1종 사업장이나 청정연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방지시설이 없는 경우도 가입대상인가요?

A

대기배출시설 1종 사업장은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7조제3항)

Q7

Q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나, 배출 농도가 기준치 미달 또는 측정결과 특정수질 유해물질 불검출임에도 보험 가입해야 하는가요?

A

배출 농도 또는 측정결과와 관계없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 제17조제1항제2호)

Q8

Q 특정유해물질(대기 또는 수질)을 배출하는 시설입니다. 특정유해물질의 배출 농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며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 인가요?

A 전량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수탁자 모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특정유해물질(대기 또는 수질) 배출시설을 보유하는 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므로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의 경우 현황조사표에 배출되는 물질명은 모두 기록하시되 물질량은 0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Q9

Q 의료폐기물(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종합병원이며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설이 아닌 배출시설이며, 위탁처리 하는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요?

A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는 보험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입니다.



Q10

Q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이며 전량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폐기물 배출시설은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Q11

Q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허가는 있으나 보관 저장 시설이 없는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대상이 아닙니다.
법 제17조제1항제5호 및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을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2]에 따른 상위규정상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이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며,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Q12

Q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이나 토양오염검사 면제를 받은 경우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요?

A 토양오염검사 면제 여부와 보험가입대상 여부는 무관합니다. 토양오염검사 면제의 경우에도 시행령 별표3 제1호 각호의 시설에 해당되면 환경책임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2 보험 가입 주체

Q1

Q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 시설의 소유자, 설치자, 운영자가 상이한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 주체는 누구인가요?

A

환경책임보험 가입 주체는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입니다.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보험의 가입주체는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이며, 해당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운영권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자가 환경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시설 등을 임대차 하는 경우에도 시설의 인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3 보험 가입 시점

Q1

Q 시설을 최초 설치하려는 사업자에 대한 환경책임보험 가입 시기는 언제인가요?

A 시설을 가동 하기 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사업자는 시설을 시운전 하기 전에 환경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가입 의무대상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해양시설은 시설의 설치전에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Q2

Q 배출시설 등의 인허가 담당자는 언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가요?

A 인허가 전에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기 및 수질 관련 인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시까지 환경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4 보상한도 및 가입단위

Q1

Q

보험을 가입한 사업장이나 환경책임보험에 의무가입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환경책임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환경오염 피해가 보험을 통해 보상됩니다. (시행령 제8조제4항)

Q2

Q

사업장 내에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가요?

A

모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의무가입 대상 기준 시설과 그 외 시설이 혼재된 경우에도 모든 시설에 대해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Q3

Q 동일한 사업장내에 대기시설의 나군, 수질시설의 나군, 유해화학시설의 나군이 모두 있는 경우 가, 나, 다군 구분이 어떻게 되나요?

A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에 따라 대기시설 나군, 수질시설 나군, 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 나군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시설을 모두 가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은 제외합니다.

Q4

Q 동일한 사업장내에 대기시설의 나군, 수질시설의 나군으로 두 가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 나, 다군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에 따라 두가지만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군에 해당합니다.

Q5

Q 보장금액까지 보험에 가입하지만 보장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A 보장금액은 환경책임보험에서 사업자가 최소한 가입해야 하는 금액이며 가군 300억원, 나군 100억원(소기업 80억원), 다군 50억원(소기업 30억원)입니다. 법률상 배상책임한도는 가군 2000억원, 나군 1000억원, 다군 500억원 이므로 만약 사업장에서 보장금액을 초과하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배상책임한도까지 임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Q6

Q 사업자번호가 같으나 지리적으로 각각 떨어져 있는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경우 보험가입의 단위는 어떻게 되나요?

A 사업장별로 각각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시행령 별표2 비고 제5호에 따라 사업장과 연접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봅니다.

Q7

Q 거리가 좀 떨어져 있더라도 배관 등이 연결된 사업장의 경우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요?

A 사업장과 연접한 부지에서 배관 등을 연결하여 생산·공급시설의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2 비고 제5호)
다만, 사업장 사이에 도로 또는 타 소유지가 있는 경우 등 사례가 다양하므로 현장에 맞게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5 행정처분

Q1

Q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칙 (법 제47조)	행정처분 (법 제43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6 환경책임보험 운영 방식

Q1

Q 어떤 보험사의 환경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나요?

A 환경책임보험에 참여하고 있는 **대표보험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2022년 5월까지의 DB손해보험(주)가 대표보험사입니다.

Q2

Q 보험기간은 1년 단위인가요?

A 환경책임보험 보험기간은 1년이며, 보험을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3

Q 사업장이 보험계약 후 시설의 증설, 인허가의 변경 등이 발생한 경우 환경책임보험의 변경 및 보장이 가능한가요?

A 보험을 변경사항에 맞게 갱신하면 보험을 통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오염물질 추가 또는 시설 추가(증설)로 인해 시설의 변경 인·허가(변경 등록·신고를 포함)를 받아야 경우에는 환경책임보험도 변경사항에 맞게 갱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Q4

Q 사업장 현황조사표 작성 중 담당자의 과실로 작성에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사업장 현황조사표 작성 오류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계약자가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하였다고 보아 보험금 지급 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성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Q5

Q 전년도 자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 보험가입 연도의 사용물질 및 배출량의 감소 등이 반영되는가요?

A 신규가입 등 물질량 확정 배출 자료가 없을 경우에 **보험료 정산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료 정산을 합니다.





Q6

Q

환경책임보험 가입 전에 발생한 환경오염사고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가요? (신규)

A

보험증권상에 기재된 소급담보일자 이전에 발생한 피해라도 현재 그 피해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7 사업장 현황 조사표 작성

Q1

Q 사업장 현황조사표 매체별 시설 정보의 시설 노후화와 관련하여 설치 연월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매체별 해당 시설이 최초로 **인·허가를 받은 날짜**이며, 인·허가 받기 이전부터 시설을 이용한 경우 실제 설치 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Q2

Q 대기배출시설을 보유하고 있는데, 비산배출저감대상은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A 비산배출 저감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이 어려운 경우 해당 인·허가기관(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Q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서 자가측정주기에 기본검사주기가 있습니다. 배출구별로 자가측정주기가 다른데, 기본 검사 주기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배출구가 하나 이상인 경우 **배출량이 많은 배출구를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Q4

Q 사업자 현황조사표의 시설 정보에서, PSM 평가대상인데 아직 등급을 못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공정안전관리제도(Process Safety Management, PSM)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에서 발행한 평가등급을 말하며, PSM 등급은 **현재 기준 유효한 것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Q5

Q 토양오염관리대상이면서 동시에 해양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어떻게 가입해야 하나요?

A 보험가입 대상시설이 모두 포함되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므로 각각 가입합니다. 다만, 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과 해양시설은 시설용량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는데 **보험료 산출시에는 중복하여 산출하지 않습니다.**

Q6

Q 연평균가동률을 어떤 기준으로 작성하나요?

A 연평균 가동률은 365일을 기준으로 가동한 일수의 비율을 산정하여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의 시설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이 가동한 시설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가동시간에 관계없이 가동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Q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시설만 보험에 가입하면 되나요? 의무가입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도 사업장 현황조사표와 배출량(방류량) 및 처리량 기입양식을 작성해야 하나요?

A 의무가입 대상 기준시설과 비대상 시설이 혼재되어 있다면 모두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법 제17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는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현황조사표 작성 시 법 제17조제1항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은 ‘타시설로 의무가입’ 부분에 체크하여 주시면 되며, 배출량(배출량) 및 처리량도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 사업장이 대기와 수질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대기만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대상인 경우

구분	상세 내용 (해당사항 모두 체크)				
대기	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의무가입	<input type="checkbox"/>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대기1종		
	타 시설로 의무가입, 대기시설 보유	<input type="checkbox"/>	대기2종	<input type="checkbox"/>	대기3종
		<input type="checkbox"/>	대기4종	<input type="checkbox"/>	대기5종
수질	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로 의무가입	<input type="checkbox"/>	특정수질유해물질배출시설		
		<input type="checkbox"/>	수질1종		
	타 시설로 의무가입, 수질시설 보유	<input type="checkbox"/>	수질2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질3종
		<input type="checkbox"/>	수질4종	<input type="checkbox"/>	수질5종

8 사업장 배출량(방류량) 및 처리량 작성

Q1

Q 올해 신규 사업장의 경우 배출량(방류량) 및 처리량을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신규 사업장의 경우 가장 최근 측정한 결과를 기준으로 연간 배출량(방류량) 및 처리량으로 환산하여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배출량(방류량)이 없는 경우는 인·허가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Q2

Q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방류량을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A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은 방류량이 없으므로 사업장 배출량(방류량) 및 처리량 기입양식의 **수질분야 물질량을 “0”**으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해당 사업장에서 수질오염방지 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폐수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 배출시설입니다.

Q3

Q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등의 폐기물도 기입해야 하나요?

A 폐기물 배출시설은 환경책임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량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Q 대기(또는 수질) 시설을 보유한 사업장이며 자가측정시스템을 이용해 주기적으로 배출농도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도가 측정 때마다 차이가 큰데, 연간 배출량(방류량)을 어떻게 구해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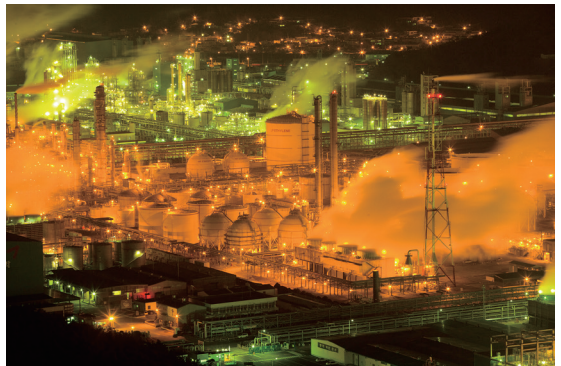
A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한 시설은 배출구별로 평균 배출농도(대기 30분, 수질 3시간)와 해당 평균 배출유량(대기 30분, 수질 3시간)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자동측정기기를 미부착한 시설은 일일평균배출량에 조업일수를 곱하여 산정하며 일일평균배출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 폐수배출시설

- 배출구별로 측정한 각각의 일일오염물질 배출량을 합산한 후 오염물질 측정 횟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일일오염물질 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날의 폐수총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 배출구별 자가측정 농도에 측정당시의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배출량을 각각 합산하여 이를 자가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9 일반화학물질 보험료 산정 및 보장 관련

Q1

Q 일반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산정하여야 하는 이유?

A 최근, 일반화학물질로 인하여 화학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화학물질에 대한 보험료가 책정되지 않아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보장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예방하기 위하여 **일반화학물질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산정하되 최저 보험요율을 적용**하였습니다.

Q2

Q 일반화학물질의 물질량을 산출하는 기준은?

A 일반화학물질의 물질량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황조사표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 통계 조사량 중에 유해화학물질을 제외한 일반화학물질 중에 **다음의 물질을 제외하고 양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고체 광물 또는 1차 가공된 광물류 등으로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물질(석회석, 석탄 등)
- ✔ 특정토양오염관리 대상시설 등 사업장 내 다른 시설에서 보험료가 산출된 물질
- ✔ LNG, LPG 등 연료로 사용되고 있는 물질로서 사고 발생시 화학사고로 보기 어려운 물질

Q3

Q 일반화학물질 사고의 보장 범위는?

A 보험가입시 일반화학물질 보험료가 책정되었다면, 모든 일반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피해에 대해 보험을 통한 보장이 가능합니다.



10 할인을 관련

Q1

Q 할인이란?

A 무사고 사업장, 환경시설 양호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최대 20%까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Q2

Q 무사고 할인율도 있나요?

A 보험사고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무사고인 사업장은 5%의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Q3

Q 할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A 할인은 보험사에 보험 가입 또는 갱신 전에 제출하는 현황조사표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따라서 **현황조사표 작성**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Q4

Q 할인율의 범위는?

A 2021년 6월 현재 기준 최대 20%입니다. 향후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Q5

Q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A 할인율은 시설노후화, 부지경계거리, 공정안전등급, 이중 배관 및 탱크 여부, ISO 등 인증 여부 등의 사항을 종합평가 하여 결정합니다.
따라서, 시설 개선 및 관리 우수 사업장의 경우 할인율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현황조사표를 꼼꼼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중소기업 관련

Q1

Q 중소기업의 경우도 똑같이 적용하는지?

A 중소기업의 경우 가군 시설은 나군 시설로 봅니다.
소기업의 경우에는 나군 시설은 다군 시설로 봅니다.

Q2

Q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파악하나요?

A 중소기업 여부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2015.1.1시행)되어 중소기업 판단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다만, 기존 중소기업에 관한 특례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변경 전: 상시근로자 기준 등 → 변경 후: 평균 매출액 기준 등



환경책임보험 길라잡이



문의처: 1670-5420